

의안번호	제 777 호
의 결 연 월 일	2018년 월 일 (제 회)

도유(행정)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8년 3월 14일

도유(행정)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

의안 번호	제777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년 3월 14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옥천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는 소방차량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다수(8대)의 차량을 실외에 주차하여 출동준비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으로, 우천·강설로 인한 장비 기능 저하 및 긴급출동시 장애요인(동절기 앞유리 성해)이 현존하는 실태로써
- 옥천군에 차고 증축을 요청, 2018년 3월 옥천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증축 예정을 통보 받은 상황으로, 차고 증축사업 관련 부지는 옥천읍 문정리 439번지(옥천군 소유)와 260-9번지(충청북도 소유) 일부에 증축됨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(사용·수익허가)의 ‘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’에 해당함으로 사용허가 하고자 함
- 옥천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차고가 증축되면 긴급출동차량 관리 및 추후 고층화재 및 다세대 주택화재 진압에 꼭 필요한 굴절 사다리차량 배치 시 주차공간의 확보로 옥천군 지역의 각종 화재 및 재난 대응활동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게 됨
- 2018년 3월 옥천군 추가경정 예산 및 2018년 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건립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건축물 축조 사업 추진을 위한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도유(행정)재산 영구시설물 축조

○ 대 상 : 토지

(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260-9번지 2,734㎡중 일부편입- 50㎡)

○ 토지가액 : 2백13만원(42,700/㎡)

○ 사용기관(다른 자치단체)

- 옥천군

○ 동의내역 :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(옥천소방서 소방차고 증축)

○ 적용시기 : 2018. 4. 1. 부터

○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근거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제1항 제11호

3. 참고사항

○ 옥천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차고증축 사업계획 및 관계 법령

옥천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차고증축 사업계획

소방차량 보강계획에 따른 차고 공간 부족으로 소방차량 유지관리
의 어려움이 있어 차고 증축을 통한 차고지 확보로 출동태세 확립에
만전을 기하고자 함.

I 추진배경

- 신규 소방차량 보강 및 기존 배치된 차량의 차고 공간 부족으로 소방차량 유지관리 어려움 발생.
- 소방차량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차고 공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

II 추진근거

- 소방력 기준에 관한규칙(행정안전부령 제2호-2017.7.26.)
-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(보조대상 사업)

III 현 청사 현황 및 문제점 · 개선대책

- 現 청사 현황
 - 위 치 :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39번지(*소유자 - 옥천군수)
 - 구 조 : 양식 철근 콘크리트조 1/3층
 - 건축연도 : 2001년도(건축면적-478.73㎡, 연면적 - 887.94㎡)
- 문제점 및 개선대책
 - (문제점) 기존의 차고공간 부족으로 소방차량 실외주차(9대)
 - 기존 차고 소방차량 주차대수 - 5대(구급1, 펌프1, 탱크1, 화학1, 고기1)
 - 실외주차 차량 - 9대(화재조사차1, 장비운반차1, 예비구급차1, 구조버스1, 순찰차1, 기타4)
 - (개선대책) 기존 차고활용 전면출구 방식에서 양면출구 방식으로 차고증축
 - 증축차고 소방차량 주차대수 - 총 10대(5대 증가)
 - 증축차고 면적 - 196.7㎡
 - 증축차고 주차계획(5대)- 대형펌프차 1, 구급차 1, 굴절사다리차 1, 조연차 1, 소형사다리차 1.

IV 사업계획

- 사업위치 : 옥천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(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39외1필지)
- 사업기간 : 2018년도
- 사업방법 : 충청북도 지방보조사업 추진 (*추가경정예산 반영)
- 총사업량 : 중앙119안전센터 차고증축 1식(증축면적 196.7㎡-건폐율 12.56%, 용적율 30.36㎡)
 (※ 증축차고 196.7㎡ + 기존차고 307.5㎡ = 504.20㎡)
 ↳ 공유지(옥천읍 문정리 439번지-146.7㎡), 도유지(옥천읍 문정리 260-9번지-50.0㎡)
- 건물구조 : 철근콘크리트 스투브조
- 사업비 : 444,000 천원 소요예상
 - 건축공사 : 412,500천원
 - 설계비 : 22,440천원
 - 감리비 : 5,621천원
 - 시설부대비 : 2,700천원
- 사업개요(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- 별표 1 참조)

건축규모 (증축)	구조	건축비(단위 : 천원)			비고
		계	도비(40%)	군비(60%)	
196.7㎡	철근콘크리트	444,000	177,600	266,400	설계,감리, 토목 등 포함

V 그간의 추진상황

- 옥천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차고증축 계획(안) 검토요청(2018.01.09.-옥천군청)
 → 본 사업이 충청북도 지방보조사업(추가경정예산)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요청
- 옥천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차고증축 계획(안) 검토결과 알림(옥천군 안전총괄과-2018.01.29)
 → 옥천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(2018.02월), 옥천군 제1회 추경경정예산 반영(2018.03월)

VI 관련사진 및 도면(위치도, 배치도)



첨부 옥천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차고 증축관련 위치도(문정리 439, 260-9)



관계법령 발췌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도랑,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 다만,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7.7.>

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